

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74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0. 5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0. 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10. 25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각종 규제를 완화 · 정비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용자대상범위 상향조정 및 완화 (안 제3조제3항)
- 용자금 대부신청자격 완화 (안 제3조제4항)
- 용자금 대부신청시 보증인자격 확대 (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행정규제 완화 및 현행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초래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
- 인문계 고등학교 학자금 용자대상 범위를 30%에서 50%로 상향 조정하고 대부신청 및 보증인의 자격의 범위를 확대 완화함은 현실여건에 부합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보증인을 2명으로 정한 것은 의무사항인지
- 답 : 금융기관의 의무사항임.
- 문 : 주민소득지원 사업비의 한도는
- 답 : 2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1,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2,000만원 까지 융자 가능함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10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